

압수물 가환부신청서					처리기간 즉시	
신청인	성명			생년월일		
	주소	전화: 팩스:				
	압수물에 대한 관 계					
사건번호		20 년 형제 호				
피의자						
신청사유						
아래 압수물에 관하여 가환부를 받는 경우 훼손·폐기·양도·질권설정 등 어떠한 처분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,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관하고, 귀 검찰부가 제출명령을 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하겠으니,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아 래						
품 명		수 량		품 명		수 량
20 . . . ○○○ 보통검찰부장 귀하						
구비서류	없음			수수료	없음	
담당자 확인	압수번호		증제번호			
주임군검사 결 정	군검사 ○○○	가	불허가 이유			
		부				

이의신청 안내

군검사의 가환부 불허가결정 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가환부 불허가 통지(고지)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「군사법원법」 제466조에 따라 준항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의를 제기하시려는 분은 위 기일 내에 이의신청서 또는 준항고장(이 경우 군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불허가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)를 작성하여 ○○○ 군사법원(☎:)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○○○ 보통검찰부

전화

팩스